

04

해외 통상 애로

- ① 비관세장벽 및 TBT/SPS 등 기술장벽에 대한 이해
- ② 한-인도 CEPA 원산지검증, 은행보증금(Bank Guarantee)
환금지연 애로 해소





PART

04

해외 통상 애로



비관세장벽 및 TBT/SPS 등 기술장벽에 대한 이해



김동석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자유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국이 처한 경제적 여건, 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때로는 나라별로 자유무역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하게 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무역에 개입하는 정책을 보호무역정책이라고 하며, 이러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대표적인 것이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다.

이번 호에서는 각국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소개하고, 그중 보호무역 수단으로 최근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과 위생·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에 대해서 알아보자.

비관세장벽 이란?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은 관세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총칭한다.

공식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으나, UN 전문가들은 ‘교역되는 상품의 수량이나 가격을 변화시켜 잠재적으로 국제교역에 악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 조치’를 통상적으로 비관세장벽이라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비관세장벽이 주로 수입 금지, 수량 규제 등 국가 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 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관세(Tariff) 이외의 자유로운 교역 활동을 저해하는 무역과 관련된 일체의 장벽을 비관세장벽이라 하며, 상품무역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무역투자조치, 정부조달 및 지재권(상표등록 등) 관련된 애로사항도 비관세장벽에 포함된다.

비관세장벽의 유형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의미하며, (1) 주로 수입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와 관행이지만, 수출에 대해서도 취해질 수 있으며, 또한 (2) 국경에서의 통관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국가 내에서 국내 규제(Domestic Regulation)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



국내 규제 형태의 대표적 형태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과 위생·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이며, 최근 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비관세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 (3) 수입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도 넓은 의미에서 비관세장벽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비관세장벽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취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들 수 있다.

비관세장벽(NTB)의 주요 유형

NTB 유형 분류			비관세장벽 및 조치의 형태	
상품무역 관련 비관세 장벽	수입관련 NTB	무역관련 비관세조치	통관절차, 관세평가제도	
			원산지제도	
			수입쿼터, 수입허가 및 기타 수량제한조치	
			선적전검사(PSI)	
			수출입 수수료 및 절차 등	
	국내규제 유형 비관세 조치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SPS(위생·검역조치)		
		기타: 유통제한, 사후판매서비스제한, 무역관련투자 제한조치 등		
	수출관련 NTB		수출쿼터, 수출허가 및 기타 수량제한조치	
	무역구제(수입규제)조치		반덤핑조치,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등	
非무역 관련 장벽		지식재산권 관련 (상표등록 등)		
		정부조달 관련 (입찰 제한 등)		
		경쟁법 적용 관련		
서비스 무역·투자 관련 장벽		서비스무역 관련		
		투자 관련(서비스투자 포함)		

비관세장벽의 유형별 정의

- ✔ **반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 ADD):** 수출기업 상품이 수입국 동종 제품의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는 '덤핑' 행위로 인해 수입국 경제가 피해를 본 경우, 수입국이 해당 수출기업 상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CVD):** 수출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출한 상품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보조금 액수에 상응하는 특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대응 조치
- ✔ **세이프가드(Safeguard, SG):** 특정 제품 수입이 급증해 수입국 동종 상품, 직접 경쟁 상품 생산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취하는 관세인상, 수량 제한, 관세 쿼터 등의 조치
- ✔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판정 절차 등을 국가별로 다르게 제정함으로써 수입국이 취하는 무역기술장벽
- ✔ **위생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식품에서 기인하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상의 위험(질병, 병해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실시하는 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
- ✔ **수입쿼터:** 수입국 정부가 특정 수입 제품에 대해 일정 양 이상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으로, 대개 산업 보호 효과가 강해 농산물에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공산물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
- ✔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정부에서 담당 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수출국에서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수출선적 건에 대한 외관 품질, 수량, 검사 등을 실시하고, 선적전검사 미시행 시 통관 불허

출처 : KOTRA,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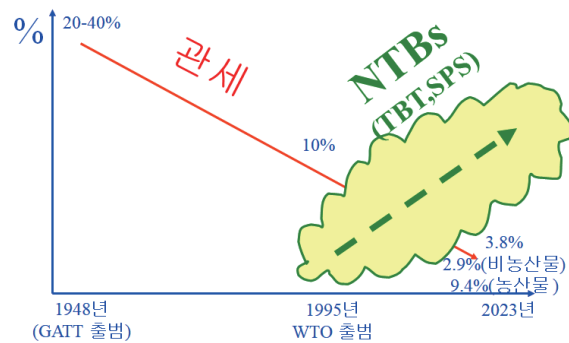
글로벌 비관세장벽의 확대로 인해 수출기업의 비용과 부담 증가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 역할을 하던 관세장벽은 1948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무역 자유화 노력과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으로 점점 약해졌어, WB(세계은행)에 따르면, WTO(세계무역) 기구 출범 당시 1995년에는 글로벌 평균 실행 관세율이 12.24%였는데 반해, 2007년 7.49%, 2017년 5.17%, 2023년에는 3.8%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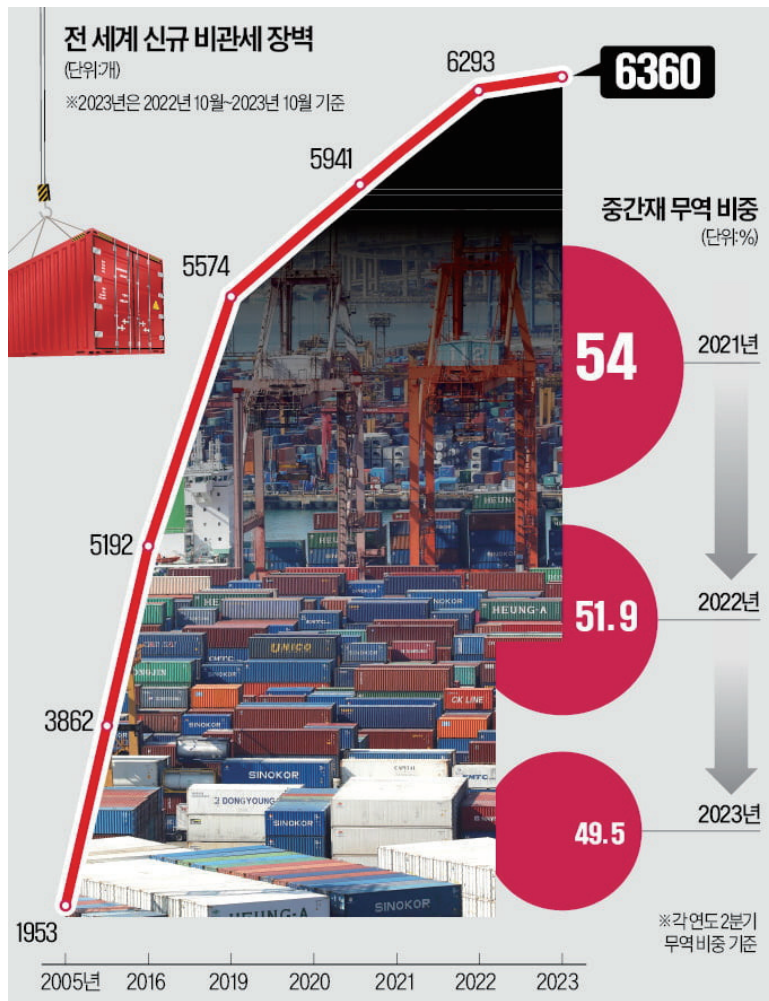
이에 반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방주의의 부활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WTO 체제 약화와 더불어, 많은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다양한 비관세장벽 조치를 취함에 따라 비관세장벽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관세 자유화에 따른 글로벌 무역 확대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추이(1948년~2023년)



전 세계 신규 비관세장벽 현황



출처 : 한국경제, 2024.2.8. 신문기사



늘어나는 비관세장벽의 각종 조치는 관세장벽보다 상당한 대응 비용이 소요된다. UN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비관세장벽이 야기하는 비용은 관세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규격에 맞춰 제품을 재설계하고 생산라인을 변경해야 하거나, 국경 통과를 위해 별도의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큰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는 제품의 품질이나 소비자의 안전, 식품 안전 및 공중 보건 보장, 환경보호, 공정경쟁 보호 등 여러 가지 정당한 정책목표(Legitimate Objectives)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환경규제, 독과점 규제, 유통규제 등 다양한 국내 규제(Domestic Regulation)를 도입하여 시행할 주권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최근 들어 이러한 정당한 국내 규제 조치가 수입 상품의 교역을 저해하는 중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WTO 통계에 따르면, 기술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등 기술적 조치의 급증세가 두드러지며, 이러한 기술적 조치가 비관세장벽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들 기술적 조치가 중국,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KOTRA 2023년 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기술장벽(TBT), 통관절차, 위생·검역조치(SPS) 등이 언급되었으며, 실제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확대로 인해 우리 기업이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비관세장벽 유형별 현황(2023년 기준)

유형	건수	세부 유형(건수)
TBT	14	인증제도(5), 환경기술규제(4), 라벨링(2), 표준규정/절차상 문제/기타(각 1)
통관절차	14	통관지연(5), 자의적인 품목분류(3), 원산지규정(2), 과도한 서류 요구(2), 관세평가협정 위반/기타(각 1)



유형	건수	세부 유형(건수)
수입제한	10	수입허가(9), 수입금지(1)
서비스·투자장벽	7	금융·세무((3), 노무(2), 까다로운 심사기준/기타(각 1)
SPS	7	위생검역기준(4), 위생검역절차(2), 보건안전조치(1)
기타	20	정부조달(4), 수출제한/비차별의무 위반(각 3), 지재권/외국자본참여 제한(각 1), 기타(8)
합계	72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비관세장벽 국가별 현황(2023년 기준)

사례 건수	국가수	국가 (건수)
5건 이상	3	러시아 (12건), 중국(9건), 베트남(5건)
4건 이하	28	(각 4건) 미국, 이집트
		(각 3건) 모로코, 인도, 일본
		(각 2건) 인도네시아, 호주, 독일, 탄자니아, 도미니카, 페루
		(각 1건) 말레이시아, 멕시코, 불가리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요르단, 영국, 캄보디아,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튀르키예, 파키스탄, 폴란드, 필리핀
합계	72	72

출처 : KOTRA 2023년 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이제, 우리 수출기업이 가장 수출의 걸림돌로 느끼는 비관세장벽인 기술적 규제 조치인 기술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에 대해서 알아보자.

TBT 기술장벽이란?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기술장벽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무역 상대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조치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WTO(세계무역기구)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인 'TBT협정'을 통해, 규정이나 적합성과 같은 기술적 조치가 무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회원국을 지원하고 있다.

'TBT'협정은 'SPS'협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생·검역조치와 관련 절차를 모두 포괄한다.

TBT의 3가지 형태(표준,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첫째, “표준”(Standards)이라 함은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제품에 관한 규칙, 지침이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제조 방법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관에서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이다.

표준은 정부 및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다수의 상이한 단체에 의해 개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 표준(Private Standards)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표준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종종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기초로 사용되며, 이 경우 표준에 설정된 요구 사항은 법령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둘째,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이라 함은 적용할 수 있는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로 당해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 유통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령에 근거한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기술규정에는 특정 기술규정과 일반적인 기술규정 2가지 형태가 있다.

- (i) 특정 기술규정: 이는 장난감에 사용되는 도료에 있어 허용되는 납의 최대치 또는 담배 제품에 일정한 첨가제의 사용 금지와 같이 규제 사항을 특정하는 적인 것
- (ii) 일반적인 기술규정: 유기농 농산물의 라벨링 기준이나 디젤 엔진의 배출가스 요건과 같이 일반적인 규제사항인 것

셋째, “적합성평가절차”(Procedures for assessment of conformity)라 함은

어느 제품이 해당 표준이나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 또는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시험, 검사 및 인증 절차를 일반적인 지침 한다.

적합성평가절차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여, 제조업체에게는 마케팅에 활용될 목적으로 규정된다.





적합성평가절차에는 제3자 인증과 자가 인증(공급업체의 적합성 선언)이 있으며, 이들 인증 절차에 따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증 절차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요소는 제품의 위험 수준(level of risk)이며, 위험 수준을 파악하는 주체가 누구냐 따라 인증 방식이 결정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제조가가 제품의 위험도를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자가 인증을 선호하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제품의 위험도를 파악하는 주체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3자 인증을 채택하고 있다.

TBT의 애로 유형 및 그 사례

기술규제 형태	무역기술장벽 유형	유형별 대표적 사례
기술규정 및 표준 관련 TBT	과도한 기술요건	-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 이상의 과도하게 높은 기술 요건 설정 - 지나치게 엄격한 기술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 요건절차
	수입품과 국산품 간의 차별	- 기술규정 및 표준 관련 기준과 그 적용에 있어 수입품과 국산품 간의 차별
	지방정부간 상이한 기술규제 법규 및 집행	- 지방정부간의 상이한 기술규제 법규의 존재 및 집행에 있어 통일성 결여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 당해 제품에 대한 존재하는 국제표준의 비채택
	기술규제 입법 관련 투명성 결여	- 빈번한 기술규제 관련 입법의 개정 - 새로운 기술표준의 도입 관련 외국의 생산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공지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시행 - 신규 또는 개정 기술규제 법령에 대한 신속한 접근이나 구체적인 정보 미제공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TBT	심사기간 비준수 및 지체	- 인증 획득을 위한 절차 단계별 심사기간 비준수 -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검사 지체
	중복·추가 검사	-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아 중복 검사 발생 또는 별도의 적합성평가 요구 사항 존재로 인한 추가 검사 발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중 승인절차 존재
	과도한 검사비용	- 필요한 이상의 과도한 검사 비용 부과
	자의적인 심사	- 검사기관의 자의적인 심사
	기밀 유출	- 심사과정에서 신청 업체의 기밀 유출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 제한	- 적합성평가기관을 수입국 내 기관으로 제한하여 인정함으로 인한 불편 발생
기타 TBT	과도한 표시 및 라벨링요건	- 국내조달비용 표시 요구나 자국어 표기 의무 등 과도한 라벨링 요구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식·의약품 TBT가 주요, 전자·전자, 생활용품도 높은 비중

품목별로 보면 최근 3년 식·의약품에 대한 TBT 통보가 38.7% 내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식·의약품에 TBT 통보가 집중되는 현상은 최빈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 식품 분야 TBT 통보의 절반은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를 통해 이뤄졌다.

이 밖에, 전자·전자, 생활용품에 대한 통보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4차산업처럼 미래성장산업과 관련되는 정보·디지털과 바이오 환경 분야에서도 다소 변동성은 있어도 꾸준히 TBT 통보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1년 기준, 정보·디지털 분야 통보 비중은 2.7%, 바이오 환경 분야는 0.5%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품목별 TBT 통보 비중(2019-2021)

대분류	2019년		2020년		2021년	
	통보건수	비율(%)	통보건수	비율(%)	통보건수	비율(%)
식·의약품	1,213	36.4	1,358	40.5	1,533	38.7
전기전자	380	11.4	279	8.3	422	10.6
화학세라믹	351	10.5	390	11.6	454	11.5



대분류	2019년		2020년		2021년	
	통보건수	비율(%)	통보건수	비율(%)	통보건수	비율(%)
생활용품	379	11.4	348	10.4	460	11.6
농수산물	116	3.5	124	3.7	174	4.4
교통/안전	259	7.8	213	6.4	271	6.8
기계	146	4.4	123	3.7	140	3.5
에너지	132	4.0	99	3.0	104	2.6
소재나노	93	2.8	131	3.9	77	1.9
건설	127	3.8	86	2.6	125	3.2
정보디지털	69	2.1	148	4.4	106	2.7
바이오환경	23	0.7	15	0.4	18	0.5
기 타	49	1.5	40	1.2	79	2.0
합계	3,337	-	3,354	-	3,963	-

출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입국의 불투명한 규제, 절차상 문제, 과도한 애로 등으로 인한 TBT 애로 급증

기업이 제품을 수출하려면 수입국이 요구하는 생산방법과 현지 표준 등의 요건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충족시켜야 한다.

수입국 정부는 자국의 국민의 안전, 환경보전, 보건·위생, 소비자 보호 등을 다양한 명목으로 이러한 세부 요구 사항을 법률이나 시행령, 고시, 공고 등을 통하여 기술규제 형태로 운용해 왔다.

현지의 각종 기술 규정, 시험, 검사, 라벨링 요건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여러 기술규제는 우리 수출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TBT 관련 애로는 수입국의 불분명한 규제, 절차상의 문제 및 과도한 규제 등으로 파악된다.

관련 절차나 방법에 대한 현지 기관의 설명이 불충분해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현지 담당 부처가 규정이나 법률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수입이 중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제품 등록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허가 자체를 못 받거나, 까다로운 인증 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출길이 막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SPS 증가는 우리나라 K-FOOD 수출의 큰 걸림돌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위생·검역 조치로, 국가가 취하는 식품,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 관련 규제를 주로 지칭한다.

WTO(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 조치의 적용에 관한 ‘SPS협정’에서는 ‘식품이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서 인간과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회원국의 조치’로 정의하고 있다.

만일 동일 조치가 SPS(위생·검역 조치), TBT(기술장벽)에 모두 적용받으면 SPS협정이 우선된다.

SPS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조치이고, 지역마다 다른 종교·문화적 요인까지 겹쳐,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같은 식품도 어떤 국가로는 문제없이 수출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로는 수출이 안 되거나 별도의 인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SPS 애로는 수입국이 정한 ‘과도한’ 기준과 행정 요구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수입국 정부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의 증명 서류를 요구하거나 까다로운 인증 요건을 부과하면, 수출기업은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검역 기준을 터무니 없이 높여 아예 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제품의 성분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여 수출길을 막는 등의 애로 유형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진출 관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품별 위생검역 인증과 규제를 미리 숙지해야 통관 거부와 같은 최악의 사태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대표적 TBT/SPS 비관세장벽 사례

구분		주요내용
SPS	화장품 행정허가 (CFDA)	• 수입화장품 인허가 -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2~6개월 소요)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8개월 소요)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 →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엄격한 동물실험이 요구됨



구분		주요내용
	식품 행정허가 (CFDA)	•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 품목마다 중국 식약청(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함 - 보건식품의 경우 중국 당국이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해, 성분구성이 14가지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만 위생허가증 발급 → 5년근 이상의 홍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의약품에 준하는 위생기준을 적용 받고 있음 • 특정 농산품에 대한 검역기준 - 중국은 수입산 젓갈, 조미김 등 식품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엄격하여 수산 조미품 규격에 부합하기 어려움 → 김치, 젓갈 등 비조리/발효 식품의 일반세균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
TBT	강제성 제품인증 (CCC)	•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 효율 규제 - 냉장고 에너지효율 규제를 개정 규제 대상품목 확대로 현지 시험소 정보 및 샘플 송부, 대응 준비기간 부족으로 수출애로 발생 → 최소 3개월 시행유예 요청후 중국 정부가 시행시기 1년 후로 변경
		• 화장품 라벨링 규제 - 오바 라벨링(제품정보 덧붙이기)금지, 화장품의 효능 표기 시 효능검증 제3자 입증 등으로 수출지연/비용부담 발생 → 오바 라벨링 조항 삭제, 3자 효능표기 검증에 대해 미국·캐나다·EU 등과 공동대응 중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자료

주) CFDA :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인증마크

비관세장벽 대응지원 체계

관세청에서는 한국과 교역 활동이 활발한 미국, EU,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등 9개국에 관세관 13명을 파견했다.

관세관은 파견국에서 발생하는 한국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사항 해소와 해외통관 민원 상담, 해외통관 정보 수집 및 전파, 해외 관세정책 동향 자료 수집, 불법·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우리나라 통관제도에 대한 해외 민원 안내 및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해외 통관과 FTA, HS 관세율 등 관련 사이트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통관, 수출입 제한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현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KOTRA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통관 관련 정보 사이트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센터로 해외 관세 동향, 국가별 통관정보, 통관애로 해소 사례 등의 정보와 해외 관세관의 연락처를 제공한다. www.customs.go.kr/foreign
관세청 FTA포털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 FTA포털로 원산지검증, 원산지검증, FTA자료실, 원산지발급 정보, FTA기업지원 등의 정보를 제공 www.customs.go.kr/ftaportalkor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대한민국 관세율정보, 세계 HS정보, 각종 관련 법령·판례,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 등 정보 제공 unipass.customs.go.kr/clip

한편, 정부는 주요 수출국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 사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하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기술규제 등에 적극 대응하여 기업들이 수출에 겪는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 확대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호에서는 주요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 사례를 소개하여 TBT/SPS 등의 각종 기술규제 강화부터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한다.





한-인도 CEPA 원산지검증, 은행보증금(Bank Guarantee) 환급지원 애로 해소



최영훈 관세관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1. 들어가며

지난 2020.10 인도 관세청(CBIC)¹⁾은 FTA에 따른 무역 적자 해소와 특혜 관세 부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CAROTAR 제도²⁾를 시행하였습니다. 수입국 세관 당국은 수출자나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기반으로 FTA 특혜 관세를 부여할 수 있으나, CAROTAR 제도는 원산지 증명서 외에 FORM-I라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관 담당자는 원산지 증명서와 FORM-I를 가지고 심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검증 진행 기간 중에 통관이 필요하다면, 관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잠정 평가(Provisional Assessment) 방법에 따라 수입자가 세관에 담보(수입자의 Provisional Duty Bond와 은행의 Guarantee)를 제공하고 통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인도 세관에서 대부분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수입자는 FTA 특혜 관세 건에 대해 은행 보증금(Bank Guarantee)을 제출하고 통관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원산지 검증 절차가 완료되면 환급이 이루어져 처리가 종료되어야 했으나, 수출국에서 검증 결과가 회신되어야 하고 인도 관세청 본청과 세관 간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CAROTAR로 인한 은행보증금 환급 지연을 해소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통관애로 사례

A 업체는 인도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국과 베트남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부품에 대해 인도와 아세안이 체결한 인도-아세안 FTA를 이용하여 특혜 관세를 받던 중, CAROTAR 제도 도입 초기에 많은 건에 대해 원산지 검증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수입 통관 건에 대해 은행 보증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는 대략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집중되었습니다. 인도-아세안 FTA 원산지 절차에 따르면 수입국이 수출 당사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90일 이내 회신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2년이 지난 시점에도 검증 결과가 회신되지 않아 은행 보증금 환급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세관에 문의를 해도 원산지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1)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 Customs, 중앙간접세 위원회

2)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10월 시행



3. 애로 해소 방안

우선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세관을 방문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CAROTAR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와 원산지 검증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 은행보증금 환급도 수출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A업체의 경우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체와 관련기관들간 간담회를 통하여 원산지검증 회신기간이 한참이나 지나서 아직도 원산지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는지 각 단계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업체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베트남에 있는 수출자들은 원산지 검증을 완료했고 관련 서류를 모두 베트남 관세당국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인도 관세청에 알아본 결과 검증결과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여 A업체를 통하여 베트남 현지 지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베트남에 있는 인도 대사관에 검증결과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업체는 대사관과 협의하여 관련 서류를 즉시 인도로 발송을 하였고 2023년 상반기부터 검증결과를 확인하여 은행보증금 환급이 시작이 되었고, 대부분 환급을 받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은행 보증금 환급 지연 사례는 원산지 검증 절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산지 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과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수출자, 생산자, 그리고 부품을 제조하고 조달한 협력업체까지 조사하는 광범위한 절차입니다. 모든 단계가 서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본인이나 자기가 속한 부서의 업무만 신경 쓰고,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검증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A업체 통관애로 해소 사례처럼 수출자에 대한 진행 정보와 수출국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반복하여 제출하는 FORM-1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점검한다면 향후 관세조사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의 혼선이나 지연을 최소화하고, 은행 보증금을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